

1. 개정이유

2026. 10. 2.부터 공소청법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) 및 개정 형사소송법(법률 제21857호, 2026. 8. 4. 공포)이 시행됨에 따라,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공증인의 정원이 “지방검찰청” 단위에서 “지방공소청”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의 문언을 “지방검찰청”에서 “지방공소청”으로 변경 (안 제2조 내지 제4조, [별표 1]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공소청법, 형사소송법, 공증인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지방검찰청소속”을 “지방공소청소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”을 “지방공소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”으로, “소속지방검찰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”을 “소속지방공소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”으로, “소속지방검찰청에”를 “소속지방공소청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제목 중 “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 (제2조 관련)”을 “각 지방공소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 (제2조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지 방 공 소 청	정 원	
	임명공증인	인가공증인
서울중앙지방공소청	12명	89명
서울동부지방공소청	3명	3명
서울남부지방공소청	4명	7명
서울북부지방공소청	3명	2명
서울서부지방공소청	3명	2명

의 정 부 지 방 공 소 청	3명	6명
인 천 지 방 공 소 청	6명	9명
수 원 지 방 공 소 청	10명	17명
춘 천 지 방 공 소 청	3명	2명
청 주 지 방 공 소 청	3명	3명
대 전 지 방 공 소 청	5명	8명
대 구 지 방 공 소 청	7명	9명
부 산 지 방 공 소 청	7명	11명
울 산 지 방 공 소 청	3명	2명
창 원 지 방 공 소 청	4명	5명
광 주 지 방 공 소 청	6명	9명
전 주 지 방 공 소 청	3명	4명
제 주 지 방 공 소 청	1명	2명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) 각 <u>지방검찰청소속</u>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 다.	제2조(정원) -- <u>지방공소청소속</u> - ----- --.
제3조(신원보증금의 액등) ① (생 략)	제3조(신원보증금의 액등) ① (현 행과 같음)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 증금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거 나 소속 <u>지방검찰청 세입세출외</u> <u>현금출납공무원</u> 계좌에 예치할 수 있고, 신원보증금 납부의무 자와 <u>소속지방검찰청세입세출</u> <u>외현금출납공무원의</u> 공동명의 로 된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또 는 신원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 는 보증보험증권(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비용의 납부 의무불이행시에 이를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.)으로 <u>소속지방검찰청에</u> 예치할 수 있다.	②----- ----- ----- <u>지방공소청 세입세출외</u> <u>현금출납공무원</u> ----- ----- ---- <u>소속지방공소청 세입세출</u> <u>외현금출납공무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소속지방공소청에</u> -- 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4조(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)	제4조(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)
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	①----- -----

공증인이 소속하는 <u>지방검찰청</u> <u>검사장</u>이 한다. ② (생 략)	----- <u>지방공소청</u> <u>장</u>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	--